

신원보증서

신원보증인은 아래 피보증인이 _____ (이하 "회사")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다.

피보증인

성명	_____	생년월일	20____년 ____월 ____일
주소	_____		
연락처	_____	소속·직위	_____
입사일	20____년 ____월 ____일		

신원보증인

구분	신원보증인 1	신원보증인 2
성명	_____	_____
생년월일	20____년 ____월 ____일	20____년 ____월 ____일
주소	_____	_____
연락처	_____	_____
관계	_____	_____

제1조 (보증의 범위)

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제2조 (보증기간)

이 계약의 보증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. 보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,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을 수 없다.

제3조 (책임의 한도)

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은 금 _____ 원정을 한도로 한다.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4조 (회사의 통지의무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린다.

- 피보증인이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
- 피보증인의 업무 또는 근무 장소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

제5조 (계약의 해지)

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,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경우,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 (계약의 종료 등)

이 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된다.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원보증법에 따르며, 신원보증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

20____년 ____월 ____일

신원보증인 1 : _____ (인)

신원보증인 2 : _____ (인)

피보증인 : _____ (인)

대표이사 귀하